

제14강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

강 의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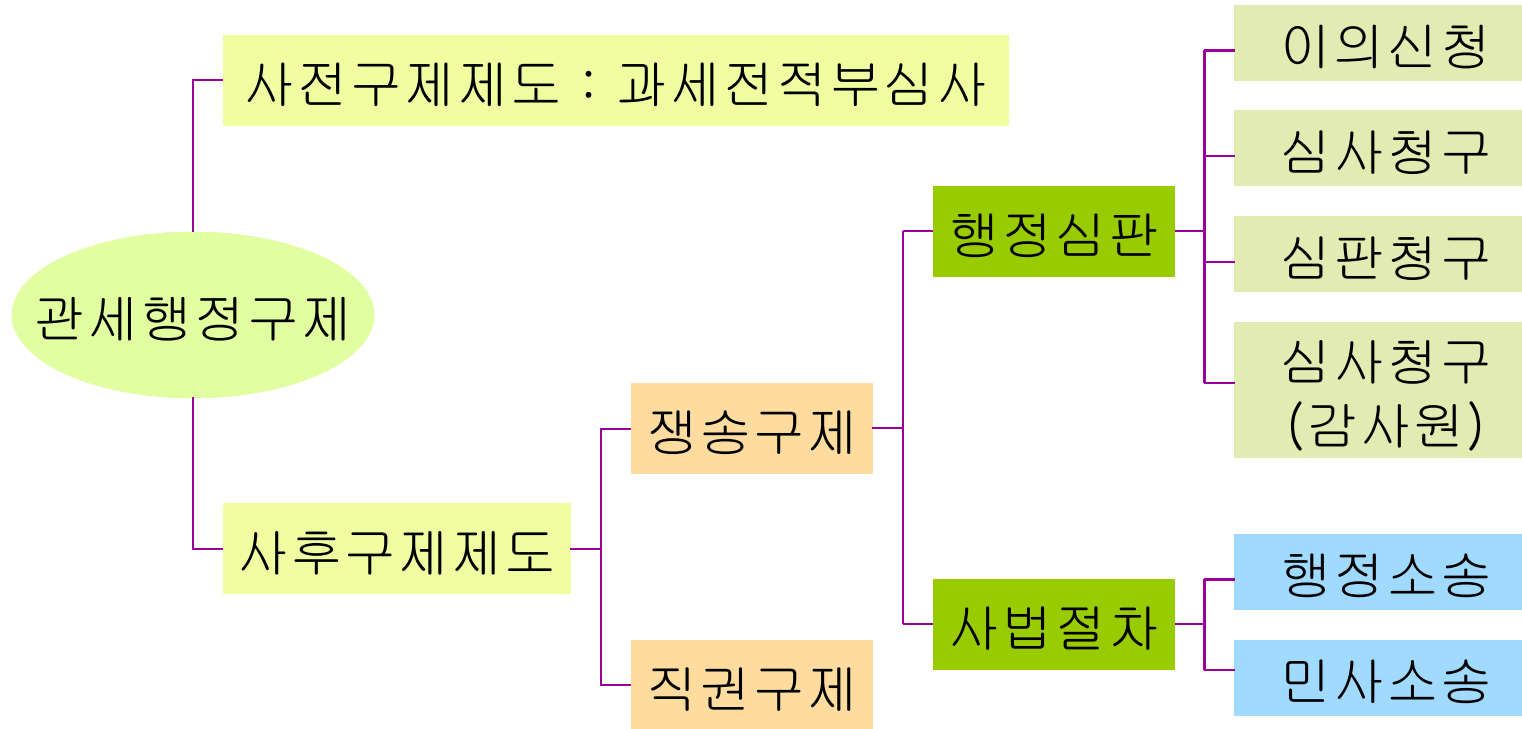


<주요 강의내용>

1. 관세행정구제제도의 개요
2. 과세전통지와 적부심청구
3. 적부심청구의 효과
4. 과세전적부심위원회 결정
5. 행정쟁송 절차
6. 행정심판의 청구와 결정
7. 행정소송

국세공무원교육원

1. 관세행정구제제도의 개요



2. 과세전통지와 적부심(適否審)청구

- **과세전통지** :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그 부족액을 추가징수(=추징)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행위
- **적부심의 청구** : 납세의무자가 과세전통지를 받은 때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
- **청구기관** :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이 속하는 본부세관장이 원칙
- **관세청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지된 것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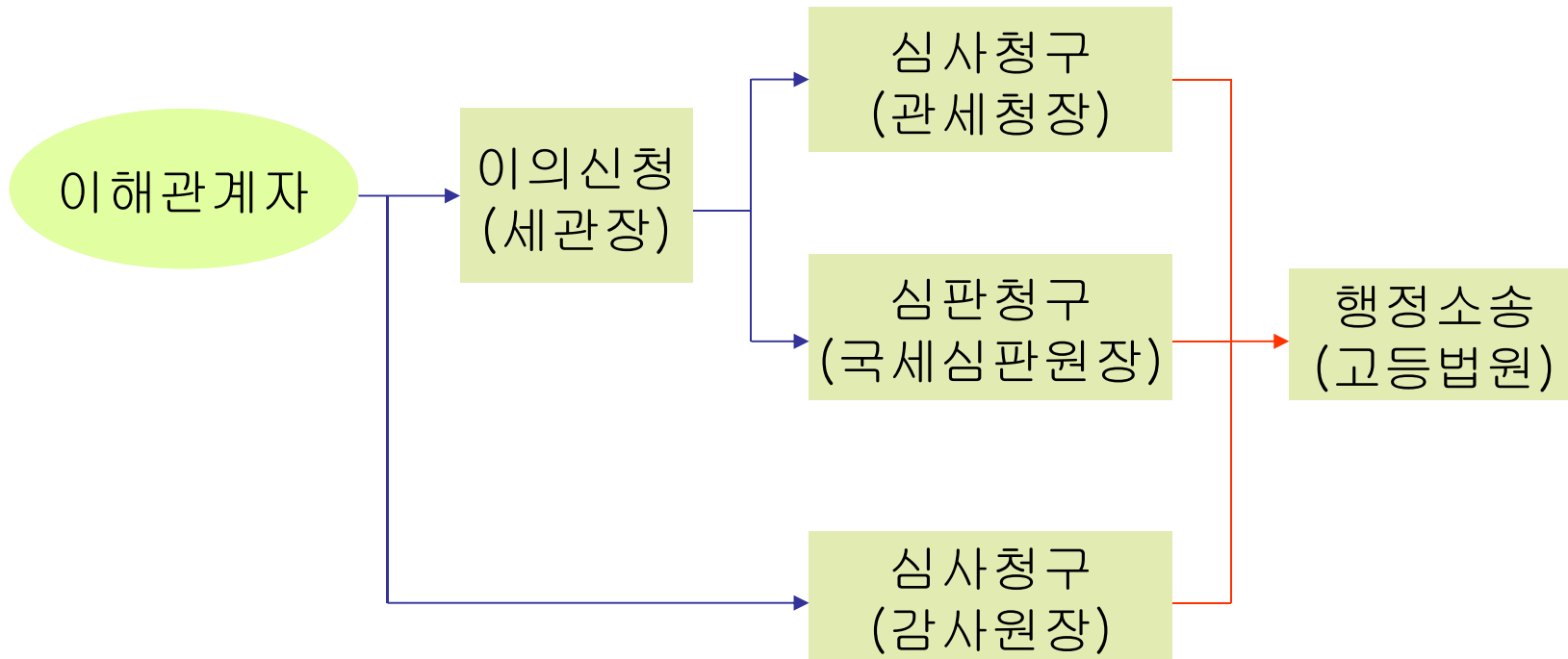
3. 적부심청구의 효과

-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한 날부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통지된 사항의 과세처분을 유보
-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**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**의 심사를 거쳐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(適否)를 심사하고, 그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
- ◆ **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** : 관세행정 공무원 5인과 재정 경제에 관한 민간 전문가 7인 등 총 12인이내로 구성
- ◆ **본부세관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** : 관세행정 공무원 4인과 재정 경제에 관한 민간 전문가 4인 등 8인 이내로 구성

4.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

-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
-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 : 청구를 채택한다는 결정
➡ 세관장은 과세처분을 할 수 없음
- 청구가 이유 없을 때 :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
➡ 세관장은 즉시 과세전통지를 한대로 과세처분
-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것이거나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: 청구건을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
➡ 세관장은 즉시 과세전통지를 한대로 과세처분

5. 행정쟁송절차



6. 이의신청

- 이의신청 청구의 대상
 - 세관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
 - 세관장의 거부처분
 - 세관장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

- 청구기간 :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

- 제기기관 :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

- 신청서류 : 이의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

7. 이의신청의 심의와 결정

- 이의신청을 받은 **세관장**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**이의신청심의위원회**의 심의를 거쳐 결정
-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관의 간부급 공무원 4인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4인 등 총 8인으로 구성. 위원장은 세관장

- **위원회의 의결** :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,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
 -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 : **인용 결정**
 - 청구가 이유 없을 때 : **기각 결정**
 -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것이거나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: **각하 결정**

8. 심사청구

- **대상** :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의 처분이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건에 대하여도 청구 가능
- **청구기간** :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(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)
- 심사청구를 받은 **관세청장**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**관세심사위원회**의 심의를 통해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, 그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
 - **관세심사위원회** : 관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공무원 4인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7인 등 총 12인

9. 심판청구

- 대상 : 심사청구의 경우와 동일
- 청구기간 :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(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)
- 심판청구를 받은 **국세심판원장**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**국세심판관회의**를 통해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하고, 그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
- 국세심판관회의는 공무원인 상임심판관 및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심판관 3~5인으로 구성

10. 감사원 심사청구

- 대상 : 관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와 동일
 - 단,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는 불가
- 청구기간 :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- 심사청구를 받은 감사원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하고, 그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
 - 감사위원회는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,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11. 행정소송

- 심사청구, 심판청구,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음
- 행정소송은 납세의무자만 제기 가능(행정청에 의한 기관소송은 불인정)
-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(서울은 행정법원)에 제기
- 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행정청은 대법원에 상소가 가능